

2021년 4월 1일

수 신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이호영 사무관님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이메일 제출

제 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제스왑과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¹)는 2021년 2월 19일 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ISDA의 개별 회원들은 시행령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귀 위원회에 직접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저희 ISDA는 그 사명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관한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안된 시행령안의 시행이 금융 시장의 안전 및 효율성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하여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¹ 1985 년부터 ISDA 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날 ISDA 는 75 개국에서 925 개 이상의 회원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DA 의 회원들은 기업, 투자운용사, 정부 및 초국가 기관, 보험 회사, 에너지 및 상품회사, 국제 및 지역 은행 등 광범위한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참여자 외에도 거래소, 중개업자,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의 주요 구성원들과 로펌, 회계법인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ISDA 및 그 활동에 관한 정보는 협회 웹사이트인 www.isd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ISDA는 세계,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선두적인 최종 실수요자와 다수의 기타 중요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저희의 선두적인 금융기관 회원들은 다른 국제금융협회의 회원들이기도 하며, 다른 특정 사안들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해당 협회를 통해 귀 위원회에 전달될 것입니다.

1. 금융위원회의 적격금융거래 일시정지조치 권한에 대한 검토

귀 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호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안에 대하여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14조의9 및 시행령안 제4조의5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귀 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4년 10월 15일 권고한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제도를 위한 주요사항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FSB 주요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로 이해하며, 저희 ISDA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귀 위원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FSB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귀 위원회는 오직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조기종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일환으로 일시정지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FSB 주요사항의 별첨5(Annex 5)가 일시정지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주요 조건들 중 하나인 “선택금지원칙(No Cherry Picking Rule)”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2. 선택금지원칙을 시행령안에 포함시킬 필요성

‘선택금지원칙’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하나의 기본계약하에 체결된 적격금융거래들 중 개별 거래를 선택하여 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하나의 기본계약하에 체결된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와 정산은 도산법상의 부인 또는 해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적격금융거래 전체에 관한 일괄종료정산(Netting)이 허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기본계약하에 있는 모든 적격금융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전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계약에 속한 거래 중 일부만 이전한다면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하나의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모든 거래의 일괄종료정산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괄종료정산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은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규제 및 증거금 규제의 기본 전제입니다. 적격금융거래의 선택적 이전이 허용된다면 이는 위 규정들의 효력을 저해하여 자본 요건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화 되거나 담보가 부족해지는 등 심각한 규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B 주요사항의 별첨5에서는 이러한 ‘선택금지원칙’을 조기 종료권 일시정지의 주요 항목들 중 하나로 강조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정리절차 중 조기종료권 및 일괄종료정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FSB 주요사항 별첨5의 권고대로 ‘선택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ISDA는 다음과 같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14조(행정처분) 제5항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시행령(안)
<p>제14조(행정처분)</p> <p>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2.></p>	<p><u>제* 조(계약이전의 범위)</u></p> <p><u>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하나의 기본계약하에 체결된 모든 적격금융거래는 관련된 계약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u></p>

상기 제안된 새로운 조항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하나의 기본계약하에 체결된 모든 적격금융거래들을 계약이전 시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담보약정계약(Credit Support Agreement) 및 보증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결어

제안된 시행령안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산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논의한 ISDA가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귀 위원회의 재량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조항을 시행령의 하위 감독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행령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미국² 과 유럽³ 의 동일한 법률에도 유사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조항이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대한민국 금융 시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ISDA의 의견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서신에서 논의된 사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시아태평양 선임 변호사인 Monica Chiu (mchiu@isda.org or at +852 2200 5908) 또는 아시아 태평양 한혜린 공공정책국장(hhan@isda.org or at +852 2200 590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한국어 번역문은 오직 참고용입니다. 번역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문법과 법률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 번역문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가 영어 원문에 사용된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본 한국어 번역문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 버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² **OLA(Orderly Liquidation Law) 12USC5390(c)(9);1821(e)(9)** : “If any qualified financial contract with a given counterparty is transferred, All qualified financial contracts between the covered financial company and any particular counterparty must be transferred to the same party (together with all claims, security and credit enhancements relating thereto).”

NYBL(New York Banking Law) section 618-a2(b) : “any master agreement for qualified financial contracts , together with all supplements thereto, “shall be treated as one qualified financial contract...”

³ **BRRD(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Article 77.1.** “so as to prevent the transfer of some, but not all, of the rights and liabilities “